

USTR의 1998 무역장벽보고서(NTE)

-한국관련 주요부분-

편집자주

USTR은 '98년 3월 31일 미국의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중대한 무역장벽을 조사한 13번째 연차보고서인 "1998 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The 1998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미국의 관련 법에 따라, USTR은 외국의 중대한 무역장벽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대통령, 상원 재정위원회, 하원의 관련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글은 '98년 NTE'의 한국관련 부분중 특히 전자산업과 연관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요약

※ USTR은 '97년 3월 31일 제 13차 연례 국별무역정책보고서(NTE, The 1998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 미국의 49개 교역상대국과 3개 무역그룹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했다.

○ NTE는 미 무역대표부가 74 통상법 제 181조에 의거, 매년 3월

31일까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실질적 장벽이 되는 교역상대국의 법·정책 및 관행을 분석하여 대통령 및 상하원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로써,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 USTR은 98 NTE에서 일본, EU, 중국과 더불어 한국을 불공정 무역관행이 여전히 심한 국가라고 밝힌다.

※ 한국은 미국의 5번째 수출국이자 4번째 농산물 수출국이나,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근검절약운동, 자동차, 통신,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의약품, 화장품 등을 주요 불공정 무역관행 사례로 지적한다.

○특히 근검절약운동이 실질적으로 수입상품을 반대하는 편견을 낳고 있어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자동차부문과 관련, USTR은 한국은 지난해 28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 전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1% 미만으로, 25%를 상회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및 일본(6%)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수입관세율은 8%로 미국의 2.5%에 비해 3배이상 높다고 밝힌다.

○또한, 한국의 무역관련 법률 및 규제 투명성에 대해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명성의 결여를 제거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 현재 미국의 산업과 농산물이 한국시장접근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나, 한국의 신정부가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자유무역, 투자 및 시장경쟁 등의 부문에서 많은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관련 주요부분



1997년, 한국은 미국의 5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었으며, 특히 농산물 부분에서는 4번째로 큰 시장이었다. '97년 미국과 한국간의 상품거래(merchandise trade) 규모는 1996년의 492억불에 비교되는, 480억불이었다.

한국으로의 수출금액도 '96년의 226억불에서 7.5% 감소하여 251억불에 머물렀다. 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96년의 226억불에서 2.2%증가한 232억불이었다. '97년 미국의 對한국 상품교역 수지는 '96년의 40억불에서 50%이상 감소한 19억불이었다.

'96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전년보다 6.6% 증가한 55억불이었다. 미국의 FDI는 대개 제조, 금융 및 도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개관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의 하나이나, 기업활동을 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나라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올해의 미한교역관계는 크게 다르고 새로운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1997년 12월 원화가치의 극적인 절하이후, 한국은 IMF와 금융, 기업, 노동, 투자 및 기타 교역과 관계된 구조적 개혁조건을 포

합하는 거시 경제적 안정화 패키지를 합의했다.

이 합의의 취지에 부합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촉진, 수입품 수용, 기업집단 즉 재벌(chaebols)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강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대통령은 정보, 은행 및 재벌간의 유착을 단절하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발전에 중심이 된 이러한 유착은 한국시장과 해외시장의 경쟁 및 시장개방을 저해했다. 완전하고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한국의 안정화관련 개혁은 한국내의 자유교역, 투자 및 경쟁 등의 장벽을 감소시킬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화는 '97년 11월에서 '98년 1월 사이에 약 50% 절하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원화절하의 완전한 효과가 무역금액 측면에서 실현되려면 몇 달 걸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98년 한국의 경제성장이 부정적이 되고, 한미간의 상품교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수입정책

○ 관세 및 세금

'97년 한국은 미국기업에 대해

두 가지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cellulose 수입품에 대한 조사는 덤핑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철회되었다.

Medium-Density Fiberboard 조건의 경우,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미국과 말레이시아산 수입품이 국내생산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98년 1월 재정경제원의 권고로, 무역위원회는 미국산의 시장 점유가 1% 이하이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치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했다.

또한, '98년 1월 한국산 DRAM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한국의 제소를 고려기 위해 WTO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되었다.

○ 비관세 조치

수입선 다변화 제도

'97년 12월 현재 한국은 일본산 113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IMF와의 안정화패키지 합의 하에, 한국정부는 3단계로 '99년 6월 30일까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WTO와의 합의에는 한국은 동 제도를 '99년 12월 31일까지 폐지기로 되어 있다.

표준 및 부하성평가 절차 (샘플링, 검사, 시험 및 인증)



한국의 정부기관은 화장품, 식품 첨가물, 의약품, 화학품, 전자제품, PCS 및 기타 상품에 대해 사전승인을 요구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몇몇 제품에 대해 사전승인을 요구하나, 한국에서는 관련제품의 범위가 예외적으로 넓어서, 기업들은 비정상적으로 세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승인/인증 절차에 제출된 정보는 보호되지 못하고 때로는 언론에 유출된다. 이는 수입제품에 악영향을 미친다.

'98년 1월 5일 현재, 한국정부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형식승인 면제가 적격한 수입품(재수출용)의 정의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전자 및 방송 기기 수입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철폐하여 투명성을 증가시켰다.

정부조달

한국은 '97년 1월 1일부터 WTO 정부조달협정(CPA,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의 이행을 시작했다. GPA하의 한국 포괄범위는 국가 안전과 방위, 한국통신의 통신제품과 네트워크 장비의 조달 및 인공위성 조달 등은 포함치 않는다(한국의 GPA 발효일로부터 5년간). 한국전력공사의 구매를 몇몇 장비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GPA 가입 이전에, '92년 한미 통신협정은 미국기업들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의 조달계약의 참여를 보장했다. 미국을 이양자협상에 관한 한국의 이행을 연례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는 '88년 종합무역법의 1377조하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96년 7월 한국은 '88년 통상법 의; 1374조에 의거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되었다. 97년 양자협상을 통해 정부정책을 명확히 하고 통신조달과 관련하여 정부가 간섭치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수출보조금

과거 한국은 다양한 정책적 보조를 통해 수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WTO에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되는 이러한 제도를 점차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IMF와의 합의에 따라, 한국은 3가지 교역관련 WTO금지 보조금의 철폐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정보는 '98년 3월까지 면세 및 감세조절법의 다음 3개 조항의 폐지를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 수출손실준비금 (2) 해외시장개척준비금 (3) 투자촉진을 위한 세금우대.

한국은 이러한 조치를 WTO에서 '98년 12월까지 폐지기로 했었다. 또한 IMF 패키지하에 '98년 1월 한국은 행정법령을 통해 정보통신부의 미니컴퓨터 사용촉진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지적재산권보호

한국은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법과 이의 집행을 강화하는데 큰 노력을 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인정되어, 한국의 스페셜 301조 지위는 '97년 4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서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WTO 교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의무에 의거하여, 한국은 '95년 12월 4가지 법안(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장(design) 및 상표(trademark))를 통과시켰고, '96년 신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세법을 이행했다.

'97년 상표법은 3차원의 상표(한국에만 등록되어 있음)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된 상표법은 '98년 3월 1일 발효되며, 특허법원의 설립도 같은 날자에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의 IPR 수준을 이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TRIPS 의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불공정한 경쟁과 영업비밀에 대한 한국의 관련 법이 영업비밀보호를 제공하나, 아직은 불충분하다.

예를 들면, 미국기업들은 등록이나 인증서 자세한 제품정보(예, 공식 혹은 청사진)의 제출을 요구하는 정부의 규정에 대한 연속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한국의 관련법상 영업비밀의 공개가 금지되어 있으나, 제출한 정보를 한국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보호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한국의 경쟁업체나 그들의 무역관련 협회에 누출된다.

의장법의 최근 개정은 '9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법하에, 특허청(KIPO)은 의장권 지속의 연장 및 의장신청절차의 단순화를 통해 산업의장을 더욱 경쟁력 있게 한다. 새로운 의장등록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상품의 등록신청은 검사 없이 가능해 질 것이다.

서비스장벽

한국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몇몇 서비스 부문의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지분 확대 등에 제한된다.

O A/V(Audiovisual)

스크린 쿼터

연간 방화의 의무상영일 비율을 (현재 146일, 특정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106일 가능)정함으로써, 한국은 효과적으로 수입영화에 대해 스크린 쿼터를 부과하고 있다. 이 쿼터제도는 영화관건축과 극장분배의 방해요로 작용한다.

케이블 TV의 외산프로 쿼터

케이블 TV는 50%밖에 외국 스포츠, 과학 및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방송하지 못한다. 영화 등의 다른 프로는 더 엄격하여 30%의 쿼터를 적용 받고 있다. 쿼터는 한 방송채널당으로 적용된다. 겨우 두 개의 영화채널이 있으며(하나는 기본 또 하나는 유료), 엄격한 쿼터에 해당된다. 또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한국의 케이블 TV 회사들이 위성전송을 곧바로 재방송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쿼터는 외산프로시장을 제한하고 있다.

위성방송 재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케이블 TV 회사들은 외국방송사에 사용자 요금/로얄티를 지불하지 않고 미국을 포함하는 외국 프로의 위성전송을 재방송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그러한 재방송에는 요금이 필요없다는 가정하에 운영하고 있다.

투자 장벽

한국은 외국인 투자의 공식적인 장벽은 대부분 제거하였으나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외국 투자가 들의 한국시장 진입은 법과 규정에 의해 지속적으로 많은 조건이 붙는다. 대개 불투명하며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애매한 행정지침과 관료적 인허가 등도 아직 남아 있다.

한국의 투자제도는 아시아의 인접국보다 더욱 제한적이며 OECD 국가기준을 크게 밀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환경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새 대통령의 외국투자 유치노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97년 2월 현재, 외국투자자는 정부에 그들의 의향을 통보하는 것만이 필요하게 되어 실제적 적용은 철폐되었다. 현재의 법으로는, 정부는 활동이 명백히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되거나 국가안보,



공중질서의 유지, 공중보건 / 도덕 / 안전의 보호 등과 관련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자의 통보를 기각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제출후 50일 이내에 통보를 기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투자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정부가 투자에 필요한 서류는 줄였으나, 통보절차는 아직 부담이 되어 계약서 같은 비밀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9년 양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미국기업 특히 통신업체들은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정규적으로 사실상의 (de facto) "국산품 구매 (buy local)" 정책에 따라 관련제품을 구매하며 사기업들도 이를 따를 것을 활동적으로 고무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94년 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원숙소 등 상업적 용도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토지취득법"을 개정했다.

'97년에 이 법이 더욱 완화되었으나, 미국은 기타 관련 법들이 외국인의 토지구입, 사용 및 판매 등에 과도하게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자유로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정부는 설립된 지가 3년 이상된 기업과 한국증권거래소가 지

정한 기업들은 자사 주식의 최소 30%를 일반인에 매각토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계속하여 한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공개화 (going public)" 정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WTO에 교역 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의 이행의무에 불일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통보하지 않았다.

반경쟁적 관행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공정거래법의 집행 및 한국경제의 경쟁정책 개선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최근의 개혁조치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각료급 부서 수준으로 승격되고 직원이 충원되었다. 미국의 견해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변화라는 것이다.

'96년 공정거래위는 라이벌 기업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회원사들을 반경쟁적 관행으로 유도하는 관련단체들도 규제하겠다고 결정했다. '96 공정거래위는 60개 관련단체에 134가지 반경쟁적 혹은 불공정한 정관 및 내규의 개정을 명령했다. '97년 공정거래위는 57개 단체의 내부규정과 관행을 조사하여 79개 항목이 개선되어야 한다

고 지칭했다. 공정거래위의 규제완화 태스크포스팀은 업종단체에 위임된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동의했다. '97년 공정거래위는 40에서 50개 단체에 정부위임권한을 남용치 말라고 명령했다.

위에서 언급한 경쟁법과 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기타 장벽

투명성 결여

한국의 많은 교역관련 법과 규정은 명시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행에 관한 것이 내부지침에 의해 지시되고 이는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지고 때로 공표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세관원들은 큰 재량권을 발휘한다. 이는 적용의 불일치, 가장 제한적인 적용 및 기업이해간의 불확실성 등을 유도한다.

이러한 투명성 문제에 일정부분 진전이 이루어 졌지만, 더 이상 투명성의 결여가 교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절약 캠페인과 수입반대 편견



절약캠페인은 명목상으로는 개인소비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효과는 수입품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미국기업의 한국에서 맞이하는 또 다른 장벽이다. 한국의 무역적자가 '96년과 '97년 1월 증가함에 따라, 언론과 한국정부는 정규적으로 소비재, 식품 및 농산품, 의류, 가구, 여행 및 교육의 수입증가의 영향이 경상수지적자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절약캠페인의 수입반대 측면의 관여를 부인하나, 미국기업의 불만은 한국관리들이 수입을 저해하는 중재적 행동을 취함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97년 3월 좀 더 시장지향적인 경제자료팀이 임명되었다. '97년 5월 한국정부는 수입품이 한국 경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고 공개 발표했으며, 공무원들에게 수입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IMF 프로그램하의 고이자율, 은행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 및 금융부문의 개혁 등이 '98년 낮거나 마이너스인 경제성장, 수많은 기업의 부도 및 높은 실업률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는 '97년 11월과 '98년 1월 사이에 50% 절하되어,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은 경제위기에 강력히 대

처하여,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며 시민단체와 언론이 소비절약, 특히 수입품의 소비절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방송국들은 캠페인방송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큰 수입 차보다는 작은 국산 차를 애용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주유소는 수입차사절이라는 안내판을 세웠고, 자동차 딜러들은 수입차에 대한 공격행위(반달리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2월 생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당선자는 국민들이 건전한 소비를 하고, 원산지가 아니라 가격과 품질에 근거하여 구매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불행히도, 수입반대 편견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통신

과거 미국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업체는 한국의 통신부문에서 크고 많은 장벽을 직면했었다. 한국 정부는 통신부문을 산업진흥의 주요 타깃으로 정하고 지원하여, 미국기업들의 만성적인 시장개방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거주 소수의 미국기업들이 한국의 통신서비스시장에서 소수 투자자로 활동한다. 한국통신이 더 이상 독점적인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지만, 아직도 서비스 공급자들이

장비조달에서 “국산품애용(buy local)” 조치를 따르는 징후가 있다.

'96년 7월 26일 USTR은 '88년 종합무역법(1988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1374조)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하였다. '97년의 양자협상으로 상당부분 명확한 정부정책 및 조달절차의 불간섭 보장 등을 합의했다. '97년 7월 14일 한국은 정책성명을 통해 “(1) 정부는 민간사업자 장비구매 원칙(licensing) 및 공공기관 등의 기술규격 제정원칙(Spectrum Allocation)에서 국산이 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2) 구매절차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다 (3) WTO 의무에 따른 한국의 이행범위내에서 외국기업에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를 한다 (4) 민간부문 기업들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구매결정을 한다”라고 발표했다. 미국정부는 한국통신이 이를 어길 경우 한국정부에 즉각 주의를 환기시킨다.

WTO 기본통신협정(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은 한국의 통신 운영기업(operators)을 외국인이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외국투자의 유치필요로 인해, 새 정부는 이 협정에 합의한 시장개방조치의 일정을 가속화할 것이다.